

2020년 '기록의 날' 기념 학술회의 개최 결과

□ 학술회의 개요

○ 주 제 : 기록공동체 지평의 확장, 민간아카이브

- 기조연설 민간아카이브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손동유 원장(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 주제발표 ① 흥동아카이브 / 이영남 교수(한신대학교)
② 조선통신사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 본 아카이빙 활성화 정책방안 / 조정윤 문화정책협력관(부산문화재단)
- 종합토론 윤은하 교수(전북대학교), 김영규 소장(철원역사문화연구소),
이아현 학예연구원(국가기록원)

○ 일시/장소 : '20. 6. 9. (화) 15:00~17:30 / 청주시 문화제조창C, 5층 다목적 공연장

○ 참 석 : 총 81명

(내부) 원장, 기록정책부장, 연구협력과장, 전자기록관리과장, 담당자 및 직원 14명

(외부) 발표·토론자, 기록관리 업무담당자 및 활동가 등 민간아카이브 전문가 67명

※ 중앙행정(5명), 지방자치단체(18명), 교육청(14명), 군기관(1명), 대학기관(7명), 공공기관(9명), 민간(13명)

□ 추진 성과

○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기록 수집·관리와 풀뿌리 기록문화의 중요성 증대

○ 학술회의 자료집* 및 영상콘텐츠** 등 성과물 지속 활용

-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성과활용 극대화 ('20. 8. 중)

* 자료집 현장 배포 및 전자파일(pdf) 국가기록포털 게시를 통한 정보 공유 확대

** 학술회의 발표·토론 현장 영상 국가기록포털, 유튜브 게시

○ 학술회의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첫 시행

- 12개 문항(객관식 11, 주관식 1) 30명 참여, 만족도 총점 80.52

* '20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반영(목표 80점 대비 100.65% 달성)

□ 주요 논의 내용

○ 흥동아카이브와 조선통신사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 본 민간아카이브의 현주소

○ 민관 상호 연대를 통한 민간아카이브의 한계점 개선 방안

○ 민간아카이브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

○ (전북대학교 윤은하 교수) 현재 국내의 기록관리 체계는 현용 기록물과 비현용 기록물의 이분법적 체계로 나뉨. 공공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을 주관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현용 기록으로 관리되고, 역사기록은 교육부나 문체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연구기관이나 문화재단,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관리됨.

미국의 NARA라든지 영국의 TNA, 캐나다의 LAC 같은 해외 내셔널 아카이브 대부분은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 기록물이 내셔널 아카이브에 소장 돼 있음. 이러한 기록물을 통해 내셔널 아카이브는 대중에게 국가의 최고 기록을 보존하는 곳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꾸준히 심어주었고, 이는 내셔널 아카이브의 권위와 힘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도 역사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보존과 활용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면서, 또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임을 표방하는 이상, 연구기관에서 편찬과 기록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료의 수집과 정리를 넘어, 역사기록물 보존에 대해 내셔널 아카이브로서 국가기록원만이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규명하고 발굴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함.

조정윤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문화재단에서는 역사기록물을 관리하고 계신데, 이러한 국내의 역사기록관리 이원적 구조 속에서 국가기록원이 꼭 담당해야 하고,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는 민간에서 역사기록물을 관리 할 때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고 싶은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함.

두 번째는 흥동 아카이브에 대한 토론임. 국내 기록관리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흥동아카이브는 역사기록물 아카이빙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로, 자생적 민간 아카이브이자 지방에 존재하는 지역 아카이브이며,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민간 기록물 이슈를 대변하는 아카이브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기초연설에서 손동유 원장님이 언급했듯이, 우리가 민간 기록물 관리, 혹은 민간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개념을 혼재해서 사용하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종류의 민간아카이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이상적인 본질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열악함을 항상 안고 있음. 이것은 비단 아카이브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라는 슬로건이 붙은 풀뿌리 운동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와 마을 기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기록관리 영역,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본 토론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하에서,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이분법화된 국내기록관리 구조 하에서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아카이빙 작업은 사실상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등장한 근대사회기록물과 21세기 시민사회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그런데 마을아카이브의 경우 주민자치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와는 별개로, 혹은 지자체와 함께 국가기록원이 민간 아카이브와 마을 아카이브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발표자와 기조 연설자를 포함해 어느 분이든 답변 주셔도 좋다고 생각함. 역사 기록물이든, 근현대사회 기록물이든, 현재 시민사회 기록물이든, 민간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시민 전체에 공유해야 할 기록 자원이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함께 이러한 기록물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민간영역의 기록물 관리를 위해, 공공기록물법과 국가기록원이 가장 중심에 두고 혹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업무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 철원지역 향토사를 조사하다보니 공산치하 5년과, 전쟁 3년, 미군정 1년을 거쳐 약 10년 동안의 기록 자료가 하나도 없었음. 그래서 철원의 현대사, 특히 6.25전쟁 전후 공동체의 소멸과 새로운 사회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그 당시 70~80세 어르신들을 부지런히 만났음.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던 어르신들이 현재까지 백여 명이 넘고, 대부분 구술채록을 해서 1차 사료적 가치를 가진 기록 자료를 남겨 놓은 것이 이렇게 국가기록원과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함.

그동안 2007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2008년도 구술조사 2회, 그 이후에 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 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관공서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냈지만, 민간인으로서 느낀 한계는 총체적인 자료를 찾아낼 수는 없었고, 아주 단편적인 자료를 찾아냈다는 것임. 그 다음 그 것을 재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음.

지난 3월부터 새로운 역점을 두고 철원군 옆의 김화군에 관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음. 6.25전쟁 때 2/3가 북으로 넘어간 김화군의 복원을 위한 역사자료 수집 활동을 했는데, 지역에 자료가 없어서 마을 기록단 모집을 하고 있으며, 장릉 속 사진 공모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임.

기조연설의 많은 부분에 공감함. 시골이지만 우리지역도 마을공동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의식도 많이 없어졌고, 고령화가 심화됨. 그래서 마을공동체 복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카이빙 사업 혹은 자료조사를 통해 구심체가 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아카이빙 작업이 되었으면 함. 더 나아가 이것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길 바람.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에서 사료수집 활동을 해 보니, 민간인으로서 공공자료에 접근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임. 관공서 출입이 쉽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무언가 하려해도 국가기록원이나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의 지원 없이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도 많은 난관에 봉착 해 있음. 기록물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면서 해석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음. 그 기록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어떻게 활성화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음. 기록물 수집 관리를 하시는 분들과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점을 많이 느꼈는데, 기조연설에서 언급된 ‘삼격’ 중에서 어떠한 연유에 의해 기록물이 탄생했고, 어떠한 맥락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함. 강원도 지역에서도 민간차원의 기록물 수집에 관한 이야기들은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음. 실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몇 분 있는데, 이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기회를 만들지 못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

두 번째, 흥동아카이브에 대한 이영남교수님 발표를 보면서 아카이빙이 역사분야가 아니라 사회학자가 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됨. 한 사회의 현재를 읽어보고, 물론 과거의 내용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수집하고, 장기간에 걸쳐 미시사 측면에서, 또 생활기록사 측면에서,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림. 일단 역사를 재해석하는 자료측면에서 많이 찾고 있었는데, 현재를 읽어내는 측면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함.

그리고 조선통신사 기록사례 발표에서 느낀 것은 기록물을 기록물 그 자체로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활성화와 활용에 방점을 두고 싶음.

이와 비슷한 사례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대왕이 철원에 열아홉 차례에 걸쳐 강무행차를 왔고, 동선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등 97일간이나 철원에 와서 머무른 기록을 5년 전에 찾아내, 역사기록도 기록이지만, 강무 자체가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국방력 강화라는 측면도 있어, 철원의 접경지역에서 이것을 활용한 축제를 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서, 작년 강무축제를 개최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일련의 일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는 굉장한 쾌거고, 박수를 보냄.

- (국가기록원 이아현 학예연구관)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 민간아카이브 활성화 지원,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선생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과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동일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민간아카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민간아카이브가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작함. 전문가 분들과 활동가 분들을 함께 모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원 할 수 있을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함. 그 것을 바탕으로 지원 내용을 만든 이후에 기록물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카이브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들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임.

손동유 원장님께서 발표문에서,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책수립 제안을 하셨고, 이영남 교수님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기관에서의 기획과 문서가 아카이브를 활성화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나, 두 분의 공통된 핵심의견은 결국 일방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함.

기조발제의 전체적인 주제와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 하면서, 방향, 그리고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발표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 하셨는데,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정책이 마련돼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 걸맞은 뭔가를 하는 것은 민간아카이빙에는 걸맞지 않는다, 저마다 가능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 해 가고, 필요한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해 주신 데 대해 적극 동의함.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함.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로 2006년 공공기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본격화 됨.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던 기록물 관리의 범위를 범명까지 변경하면서 민간으로 확대한 것은 당시로서 혁신적인 변화였음. 민간의 주요 기록을 수집하여 공공기록의 결락을 보완하고, 역사적 사실 규명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였음.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면, 기록 소장자를 대상화만 하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들었음. 그러나 국가기록원 관점으로 민간 기록을 수집하고, 민간아카이브 종사자나 활동가들의 인식과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 수집과 관리제도의 일부 보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고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서는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록원의 역할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아카이빙 정책을 당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함. 더불어 국가기록원이나 공공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간아카이브의 정의, 범위,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여쭙고 싶음. 원장님께서서는 발표문에서 민간아카이브를 민간영역에서 생산·소장 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와 그것이 유지·운영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고, 기업, 정당,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 공동체, NGO, 그리고 개인 등으로 범주화 함. 민간 아카이브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면 조금 더 복잡하다는 생각임. 민간아카이브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 할 수도 있고,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집만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도 함. 발표문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부터 마을공동체 아카이브까지 구분할 수 있고, 또 기록관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사료관, 홍보관, 기념관 등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음. 그리고 생산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존 주체에 따라 공공영역이지만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라든가, 이러한 기관들은 민간아카이브의 영역에 있는가 의문점도 가지고 있음. 그래서 민간 아카이브의 개념이,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에게도 여전히 생소하고 모호한 구분이 있는 것 같음. 공공의 영역에서는 인력이나 시설, 기록관리 대상, 이러한 형식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아카이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세 번째 질문은, 정책수립과 관련해 새로운 법의 제정을 언급 하셨는데,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음. 유사 법령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것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어떤 사례를 도입하는 것이 민간아카이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 하는 부분도 여쭙고 싶음. 그리고 장기적 협치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함.

두 번째는 흥동아카이브에 대한 토론임. 첫 번째 질문은 흥동 아카이브에 기록과 민주주의와 자유가 차고 넘친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것은 일상 속에 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마을 정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아카이브, 영은과 보루와 같은 여러 동무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었음.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많이 궁금함. 앞서 흥동 현대사 부분에서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지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함.

마지막 질문으로, 교수님은 우선 비정서적인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민간아카이브를 활성화 해 보자는 의미로 마련 된 것이고, 공공과 민간의 아카이브가 상호연대와 협력하자는 의미이기도 함. 발표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긴 하셨지만, 서로 신뢰를 유지하고 협력 해 갈 수 있는 자세 혹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 해 주시길 바람.

- (부산문화재단 **조정윤 문화정책협력관**) 문화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사료관의 차이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화시설임. 현재 문화정책적으로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음. 행정 구조상 국가기록원, 역사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정책이 전부 다 융복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를 넘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소통 하다보면 많은 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예술가들도 작품을 만들 때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참고 할 수 있는데, 보존에 치우치다보니 너무나 분절이 돼 있다는 부분에서, 이원화 구조가 아니라 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시민들한테 활용하고 알리는 작업이 많이 선행돼야 한다고 느낌.
- (한신대학교 **이영남 교수**) 토론내용을 총괄해서 말씀 드리면, 민간기록진흥법을 제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지금의 공공기록물법 체계 안에서는 어렵고, 새로운 틀이 필요함. 첫째는, 헌법의 가치, 특히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하는 법률이면 좋을듯. 둘째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가들도 같이 참여해 생생한 욕망을 담길 바람. 이걸 토대로 국가에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임.
- (과주 중앙도서관 **임봉성 기록관리팀장**) 작년에 중앙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이 생기고, 올해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를 만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수집하려고 하지만,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수집, 민간기록물 수집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전체적으로 행정시스템상에서 민간기록물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정책을 수립할 때 법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라든지 활동방향, 표준과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임.
- ((협)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손동유 원장**) 이야현 선생님께서 특정해 주신 질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민간아카이브에 관한 논의가 자칫 방법론으로 흐를까봐 걱정됨.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기록과 함께 이렇게 얘기 하는 게 전에 없는 도전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라는 식의 논의

이전에, 이 논의는 왜 필요한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우리는 기록을 위해서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우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의논하고 있음.

전근대 시대에도 우리 선조들은 기록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중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었고, 불행하게도 식민지와 독재를 거치면서 한백년 단절됐던 우리의 문화를 다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함. 장기적으로 보자는 것은 그냥 여유 있게 보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시도들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지 않게 천천히 가자는 것임. 그리고 굳이 바텀업(bottom-up)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아카이빙을 경험하고 시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임. 그런 요구들을 모아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공공기록물법을 중앙에서 당위를 가지고 만들어, 사회 각급에, 또 공공기관에 전파되도록 했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이었다면, 민간기록관리에 관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경험들을 꼭 듣고 받아들여, 천천히, 하나둘씩, 실수 없이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으면 함.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로 실험을 하거나, 실수를 거듭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임. 그래서 질문취지에 공감 하면서도, 논의가 방법론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붙임 3

학술회의 참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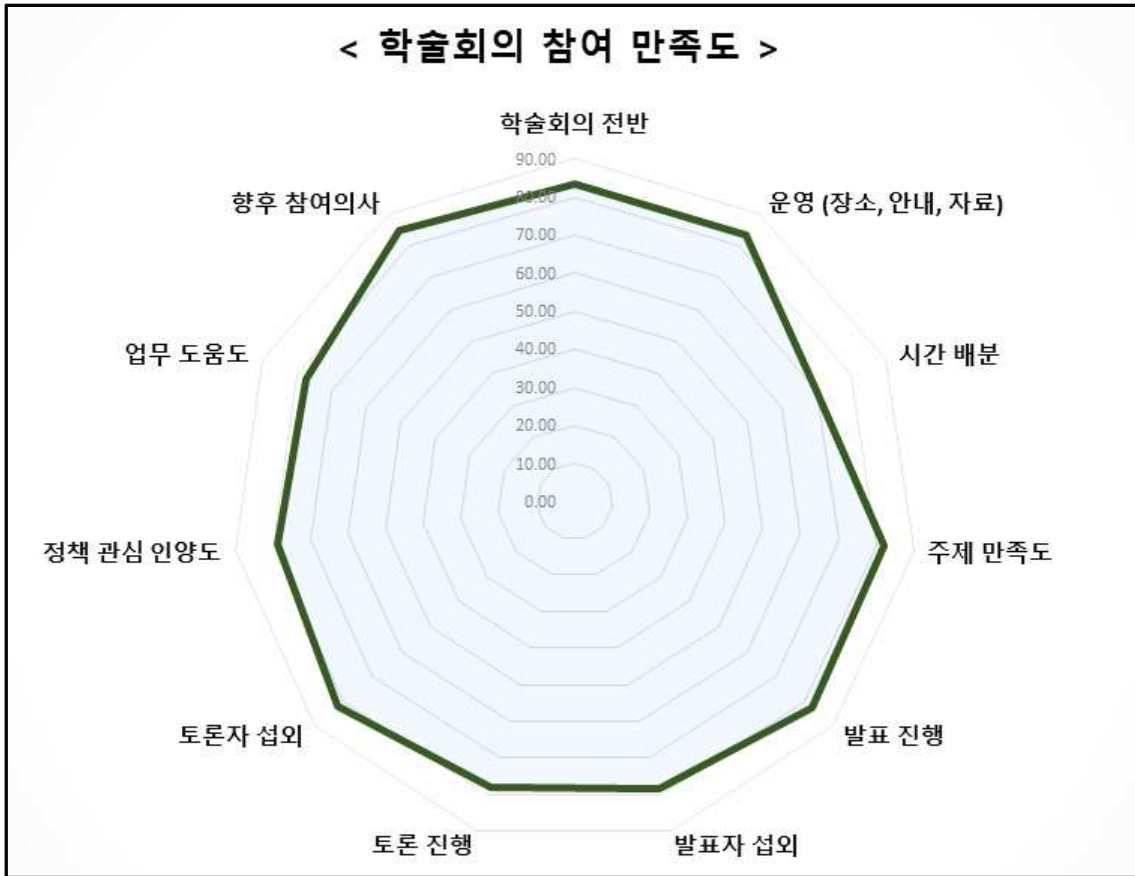
| 문항 | 총계 | 만족도(점수) | | | | | 미응답 |
|---|-------|-----------|--------|-----------------|---------|-----------|-----|
| | 80.52 | 72 | 144 | 42 | 10 | 1 | 33 |
| 문항1. 학술회의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소계 | 매우만족(100) | 만족(80) | 보통(60) | 불만족(40) | 매우불만족(20) | 미응답 |
| | 83.33 | 11 | 14 | 4 | 1 | 0 | 0 |
| 문항2. 학술회의 운영은 적절했는가? (장소, 안내, 자료) | 소계 | 매우적절(100) | 적절(80) | 보통(60) | 부적절(40) | 매우부적절(20) | 미응답 |
| | 83.33 | 11 | 14 | 4 | 1 | 0 | 0 |
| 문항3. ★ 최저 학술회의 시간 배분은 적절했는가? | 소계 | 매우만족(100) | 만족(80) | 보통(60) | 불만족(40) | 매우불만족(20) | 미응답 |
| | 70.00 | 3 | 14 | 9 | 3 | 1 | 0 |
| 문항4. 학술회의 주제는 적절했는가? | 소계 | 매우적절(100) | 적절(80) | 보통(60) | 부적절(40) | 매우부적절(20) | 미응답 |
| | 82.00 | 7 | 20 | 2 | 1 | 0 | 0 |
| 문항5. 기조연설 및 발표내용은 주제와 적합했는가? | 소계 | 매우적합(100) | 적합(80) | 보통(60) | 부적합(40) | 매우부적합(20) | 미응답 |
| | 82.67 | 11 | 13 | 5 | 1 | 0 | 0 |
| 문항6. 주제에 따른 발표자섭외는 적절했는가? | 소계 | 매우적절(100) | 적절(80) | 보통(60) | 부적절(40) | 매우부적절(20) | 미응답 |
| | 78.67 | 7 | 17 | 3 | 3 | 0 | 0건 |
| 문항7. 발표내용에 따라 토론이 적절했는가? (내용, 시간 등) | 소계 | 매우적절(100) | 적절(80) | 보통(60) | 부적절(40) | 매우부적절(20) | 미응답 |
| | 78.00 | 5 | 17 | 8 | 0 | 0 | 0건 |
| 문항8. 토론자 섭외는 적절했는가? | 소계 | 매우적절(100) | 적절(80) | 보통(60) | 부적절(40) | 매우부적절(20) | 미응답 |
| | 82.07 | 7 | 18 | 4 | 0 | 0 | 1 |
| 문항9. 본 학술회의가 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가? | 소계 | 매우만족(100) | 만족(80) | 보통(60) | 불만족(40) | 매우불만족(20) | 미응답 |
| | 78.67 | 8 | 13 | 8 | 1 | 0 | 0 |
| 문항10. 본 학술회의가 기록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는가? | 소계 | 매우만족(100) | 만족(80) | 보통(60) | 불만족(40) | 매우불만족(20) | 미응답 |
| | 77.33 | 7 | 14 | 7 | 2 | 0 | 0 |
| 문항11. ★ 최고 향후 학술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 소계 | 매우있다(100) | 있다(80) | 할 수도 있다 (60) | 없다(40) | 매우없다(20) | 미응답 |
| | 84.67 | 10 | 17 | 3 | 0 | 0 | 0 |

| | 소계 | 주관식 | 미응답 |
|---|----|---|-----|
| | | 8건 | - |
| 문항12. 향후 학술회의 개최에 있어 반영해야 할 개선점이 있다면? | 1 | 기본 법·제도의 장·단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
| | 2 | 최근 자주 논의되고 있는 민간아카이브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주최 된 것에 매우 만족하나 주제발표가 본 주제에 적절하지 못해 매우 아쉬움. 오히려 토론이 더 유익했으나, 주제발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토론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음. 민간아카이브의 현황,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논의 되었으면 좋겠음. | |
| | 3 | 참석인원 확대 | |
| | 4 | 주제를 좀 더 다양하게 | |
| | 5 | 시간분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 |
| | 6 | 주제에 대한 엄정한 조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제가 <민간아카이브>라면 그 현황, 과제, 노력들에 대한 더 집중적인 분석과 논의가 참 아쉽다. 조선통신사 기록관리가 민간아카이브인가? 홍동아카이브는 유의미하지만, 왜 또 홍동인가? | |
| | 7 | 현직의 기록관리는 공공기록관리를 추구하므로, 향후 학술회의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에 대한 주제도 다루었으면 하는 바임 | |
| | 8 | 국가기록 이외에 민간기록물과 민간에 의한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그 활동을 하는 민간기록 활동가에 대한 지원 및 기회가 필요할 듯 | |

○ 총 평 : 성과목표(평균 80점) 100.65% 달성

- 행사가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간 부족 및, 특정 발표자의 장시간 발언 따라 개별 발표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종합토론 시간배분의 균형이 어긋남
 - ⇒ 합동 행사 시 학술회의 배분 시간을 확실히 하고, 시간 부족 시 자료집을 활용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 발언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발표자에게 발언 시간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종합토론 시에도 좌장을 필두로 발언권 시간 안배를 고루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겠음
- 주제 및 발표내용 선정에 대한 엄정한 조명 필요
 - ⇒ 주제에 따른 발표내용 선정 시 '관련법·제도·사례 등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다양한 현장(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앞선 개선사례' 등이 고루 포함됐는지 충실히 검토·보완하겠음
- 학술회의 주제 및 발표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배려가 필요
 - ⇒ 발표 시작에 앞서, 사회자가 진행순서 외에도 종합 및 발표 주제에 대한 중요성과 선정 배경, 발표·토론자 이력을 간략히 소개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 하겠음
- 논의 결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 마련 필요
 - ⇒ 관련 업무 담당자가 발표·토론 등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하겠음

○ 학술회의 참여 만족도 그래프 요약



○ 설문조사 응답자 통계 분석

